

6. 감사요령 : 감사는 도시정비국의 각과별, 건설국의 각과별로 1991. 4. 15. 이후의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 제출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7. 행정사항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서

마포구청장 귀하

우리 구의회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출석(증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출서류 : 별첨
- 2. 출석일시 : 1993. 11. 30~12. 2 (3일간)
- 3. 출석장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 4. 출석대상 : 도시정비국장(관계공무원), 건설국장(관계공무원), 필요시 동장.
- 5. 출석요구사유 :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246	제출년월일 : 1993년 11월 22일 발 의 자 : 김종열의원의외 7인
----------	-----	---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마포구의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 17인
 - 선임방법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0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 목 적 : 서울특별시마포구의 "1994년도 예산(안)"과 "199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19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2. 위 원 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7인으로 한다.
- 3. 선임방법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